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 과제

- 빅데이터에 기반한 개인의료정보의 활용을 중심으로 -

김 영 국*

<차례>

- | | |
|------------------------|----------------------------------|
| I. 들어가며 | IV. 헬스케어서비스에서의 개인의료정보의 보호와 활용 방안 |
| II. 헬스케어서비스의 활성화 필요성 | V. 맺는 말 |
| III. 빅데이터 경제 3법의 개정 동향 | |

주제어 : 헬스케어서비스, 개인의료정보, 빅데이터, 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 의료표준화

<국문초록> 헬스케어서비스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의 건강을 유지·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치료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업무로서 보험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적절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실무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위해 충분한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 해석 문제, 의료정보 공유 문제가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쟁점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는 없는 상황이며, 향후에도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전향적인 유권해석 및 법령개정 등도 불투명하다. 다만, 최근에 빅데이터 경제 3법의 개정 움직임이 있고, 마이데이터 산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발표가 있기에 개인정보의 활용이 절실한 보험업 등 빅데이터 관련 산업의 가시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의료진이나 정보주체가 의료정보에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먼저 국가 차원의 의료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의료정보를 치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리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 경제 3법을 통할 할 수 있는 통합 빅데이터법을 제정하거나 개인의료정보 보호 및 활용법 제정을 통해 철저한 보안이 전제된 정보공유와 정보결합을 확대하고, 아울러 법체계상의 문제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업과 관련하여 개인의료정보를 헬스케어서비스의 선진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관리, 접근 또는 열람, 활용 시스템을 보험업계의 보험정보통합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다면,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보험업계가 갖고 있는 정보관리체계에

* 법조협회, 법학박사

- 논문접수일(2019.10.08), 심사개시일(2019.10.09), 게재확정일(2019.10.29)

국민건강관리공단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료정보를 결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할지라도 정보의 오남용과 같은 문제로 인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보주체가 정보관리자로부터 자신의 민감정보를 모바일앱 등을 통해 직접 받아 본인의 동의하에 웰스케어서비스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본다.

I. 들어가며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와 인터넷뱅킹 등 결제 수단의 발전으로 온라인상에서 크고 작은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빅데이터 기술이 동시에 급성장하면서 다양한 개인 정보데이터의 활용이 필수화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고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출되거나 악용되면서 개인정보의 활용보다는 “보호”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오히려 과도한 개인정보의 보호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거래 생태계의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이르렀다. 빅데이터를 통한 다양한 데이터의 집적과 이를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발전하였기에 개인정보의 보호에 충실하면서도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빅데이터 환경에 유연하게 연착륙하기 위하여 정부와 관련 산업계, 학계가 힘을 모아가고 있다. 예컨대 개인정보와 관련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가공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과 법제도의 준비가 진행 중이다.

보험업은 개인의 정보가 보험모집 단계부터 보험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개인정보 집약 산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의료정보는 물론 신용정보, 금융정보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 보험업은 정보보호의 법적 쟁점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보험사업자가 수집한 보험계약자 등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불법적으로 활용할 경우 개인에게 미칠 악영향은 매우 크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내지 악용 문제는 정보주체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소속기관 등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사업자는 관련법령상의 보호 의무를 다하는 것은 물론, 보험업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차등화하고, 단계별로 취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방침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 등의 개인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계약당사자의 동의하에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정보에 접근하여 활용하게 되는지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보험업은 인구의 고령화 및 감소 추세, 경제 성장률 둔화 내지 정체, 다른 금융업권과의 경쟁 등으로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보험 회사 수익 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저금리로 인해 높은 투자 수익을 얻기 어려워, 고령인구의 급증으로 손해율도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보험사업자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보험사고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실손의료보험(“의료실비보험” 병기) 등 민영건강보험¹⁾의 경우, 적절한 헬스케어서비스를 활용하여 건강을 유지·관리하고, 효율적인 치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험회사가 헬스케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고(Ⅱ), 헬스케어서비스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활용 관련 법제의 개정 동향을 검토한 후(Ⅲ), 헬스케어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인의료정보 등의 활용 방안을 법정책적 관점에서 논의한다(Ⅳ).

Ⅱ. 헬스케어서비스의 활성화 필요성

헬스케어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를 보험사의 수익구조 개선의 관점에서 4가지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 1) 사회보험의 일종인 건강보험은 민간기업 중심의 각종 사업장의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그들의 업무 외의 질병·부상·사망 및 출산에 대해 보험급여를 하는 동시에, 그 피부양자의 이러한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도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험을 “공적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이라고 하며, 민영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을 “민영건강보험”이라 한다. 민영건강보험에는 실손의료보험, 장기간병보험, 소득보상보험 등이 있다. 이하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620027&cid=50305&categoryId=50305>>; 보험미래포럼, 「건강보험의 진화와 미래」, 21세기북스, 2012. 5, 14면 참조.

1. IFRS17 도입과 보험회사 건전성 강화 필요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란 기업의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IASB”)에서 마련해 공포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2022년 시행될 예정인 IFRS17은 세계 보험사의 재무 상황을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비교하기 위해 IASB에서 제정한 원칙으로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방식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는 것이 핵심이다.

IFRS17을 도입하는 주된 이유는 현행 회계기준에 비해 유용성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NICE신용평가에 따르면 IFRS17 도입 시 보험사 재무제표 관련하여 제공되는 정보량은 많아지고 보험사의 이익 구조도 보다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저축보험료를 예수금 조달형태로 분류하고 보험부채 이자를 조달비용 형태로 구분함에 따라 타 금융업권과의 비교 가능성도 높아진다.²⁾

<그림1> IFRS17 도입 Time-Table



출처=NICE신용평가·한국회계기준원

2) 이코노빌 리뷰, [공급중] 'IFRS17' 도입에 보험사 찢찢매는 이유는 보험부채 평가방식 원가에서 시가로... 자본부담 기준, 2019. 9. 29.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73282>>.

이와 같은 IFRS17 도입에 대비하여 보험회사는 우선 부채평가 방식이 원가에서 시가로 바뀌면서 지급여력(RBC)비율³⁾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자본 확충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IFRS17 도입 시 보험사들은 과거 고금리 확정이자로 판매된 저축성 보험 상품이 많을수록 부채 부담이 크게 증가해 그에 따른 요구자본도 늘려야 한다. 현재 저금리 기조로 인해 보험사의 이익이 줄어들었음에도 과거 판매했던 대다수의 고금리 확정형 상품으로 인해 보험사가 지불해야 할 부채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⁴⁾ 이에 최근 몇 년간 채권발행 등 보험사들의 자본 확충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표1>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 기준 비교

구 분	현 행	IFRS17	비 고
보험부채 평가	- 역사적 원가	- 평가시점의 시장 가치(공정가치)로 평가	- 시가평가로 인한 부채 및 자본 가치의 변동성 확대 - 재무 변동성 증가에 따른 위험 관리 중요성 증대
사업비 인식	- 사업비를 보험계약비와 유지비로 구분 - 신계약비 이연 후 일정 기간 상각	- 사업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 - 간접비는 당기비용, 직접비만 이연 상각	- 기간별 손익 왜곡 해소 - 신계약 중심의 단기적 영업방식 축소 - 계약유지율 등 보유계약 관리 중요성 증대
보험수익 인식	- 현금주의 원칙 - 보험료 수취시점 수익인식 - 투자계약 요소도 보험사 수익으로 인식	- 발생주의 원칙 - 보험사고 발생 및 서비스 제공 시 수익인식 - 투자계약은 보험수익에서 제외	- 보험회사 보험료 수익 감소 - 타 금융기관과 비교가능성 증대 - 외형보다는 내실위주의 경영기조 강화

자료: NICE 신용평가, 한국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

3) RBC비율(risk-based capital ratio,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을 바로 지급할 수 있는 자산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다. 이하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03474&cid=40942&categoryId=31831>>.

4) 보험사는 미래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적립해둔다. 이에 금리 역마진 리스크로 수익성이 악화할수록 쌓아야할 적립금도 더욱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과거 7%대 수익을 보장하는 저축성보험을 판매했을 경우 현재는 지급 시점에 7%대 수익을 낼 것으로 추산하고 적립금을 쌓는다. 하지만 IFRS17 적용 시 현재 1%대 저금리로 줄어드는 운용수익을 감안해야하기에 쌓아야할 적립금도 더 많아지게 된다.

2. 초고령사회의 도래와 새로운 보험상품 판매의 확대 필요

2017년 8월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25년경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보험업계도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여 고령자를 위한 보험상품을 내놓고 있다. 고령자는 기본적으로 노인 만성질환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유병자보험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내에서는 고혈압과 당뇨, 퇴행성 관절염 등의 질환이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고혈압과 당뇨는 30~40대 층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일컬어지는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인들의 경우에 고혈압과 당뇨, 그리고 고연령으로 인해 정상적인 보험가입이 쉽지 않다. 어렵게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장 내용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보험료는 일반 보험에 비해 높게 책정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보험회사는 유병자보험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노후를 질병으로 인한 금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보내려는 보험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유병자보험상품의 수요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병자보험이란 “질병에 걸려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 또는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시 복잡한 계약 심사 과정과 서류 등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유병자보험 가입 시 암·뇌출혈·급성 심근경색 등 ‘3대 질병’에 대한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가 보장된다. 사망보험금을 낮추는 대신 주요 질병에 대한 진단비, 노후 생활자금 보장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병자보험은 간편 가입 보험이라고도 불리는데 유병자나 고령자들이 보험가입을 위해 거쳐야 했던 계약·심사 과정의 복잡한 요건들을 간략화 했기 때문이다. 현재 유병자보험은 i) 최근 3개월 이내 의사 필요소견(입원, 수술, 추가검사)이 없어야 하고, ii) 최근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 또는 수술력이 없어야 하며, iii) 최근 5년 이내 암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력이 없어야 하는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18년 4월부터는 질병 치료에 필요한 ‘실비’까지 보장하는 유병자 실손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일반 유병자보험이 암과 뇌출혈 등 중대 질병 및 특정 입원, 수술에 대해서만 정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달리 유병자 실손보험은 일반 실손보험처럼 장기입원이나 재활치료 등 반복되는 의료비도 보장해준다. 이밖에도

치매초기부터 보장하는 보험, 노후생활까지 보장하는 유병자 종신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보험은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높을 수밖에 없다.

3. 보험업 수익구조의 개선 필요

전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저렴하고 수준 높은 공적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손의료보험 등 민영건강보험 계약자도 많은 실정이므로 의료서비스를 과잉 이용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는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에 따라 병원의 진료 및 치료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환자에게 꼭 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적용상 차이를 악용하여 과잉 검사나 불필요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급기야 부당한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보험제도 자체의 효용성을 심각하게 왜곡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⁵⁾

한편, 보험회사의 3대 수익 형태 중 이자율차로 얻는 수익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저축보험료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높은 수익률을 올릴 때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나, 저금리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헬스케어서비스 등의 활성화를 통해 보험금 지급 사유를 줄이고 그 금액도 감소시키는 방안을 활용하거나 보험모집 및 계약 유지 비용 등 사업비를 줄이는 방법을 통해 수익 구조를 개선할 수밖에 없다.

유병자보험이나 무진사보험(nonmedicalinsurance)⁶⁾과 같은 상품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5) 의료전문가 등 의료기관을 통해 행해지는 과잉진료와 비급여진료, 허위청구 및 과다청구 문제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심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영건강보험의 수익성 악화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영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환자도 이러한 의료진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태에 직·간접적으로 동조하면서 보험제도가 갖고 있는 도덕적 해이, 역선택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영보험사업자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6) 무진단보험이라고도 하는데,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 그 승낙여부를 보험모집인의 보고서와 청약자의 고지에 의존하는 보험이다. 의학적 선택이 생략되어 신체상황에 관한 상세한 고지가 요구되며, 청약서는 이러한 점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보험시장의 급속한 확대에 따라 진사의가 부족한 이유로 발전하게 되었으나, 우리나라 민간보험회사는 일정액 이하의 계약에 한하여 이 제도를 채택하고

증가하는 추세여서 보험회사의 장기적인 수익구조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기존의 일반 보험보다는 높은 보험료를 받는 장점도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도 유리하다. 그러나 보험가입기간이 장기에 이르고 이에 따른 보장기간도 길어지므로 헬스케어서비스를 통해 보험계약자 등의 건강을 관리하고 중복과잉 치료 등 불필요한 비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다양한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wearable healthcare device, 이하 “웨어러블기기”)를 활용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건강관리 활동을 보험료에 연계시키거나 질병 치료에 적합한 병원 및 의사를 찾아주고 같이 동행하는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는 그동안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의학기술의 발전과 비교할 때,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본다. 더 이상 진보할 수 없는 이유는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진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행위 등이 없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질병 예방과 같은 적절한 건강관리법을 알려 주는 수준의 행위만이라도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보험계약자 등이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좀 더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이다.

4. 인공지능시대에 따른 보험업 환경 변화 필요

최근 들어 인공지능(AI)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면, 커넥티드 단말기 및 로봇 보급의 확대, 인공지능기술과 데이터 공개의 확대, 그리고 인지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집약할 수 있다. 특히 보험산업은 인공지능 기술과의 접목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분야로 관련 기술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실생활에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기술과 서비스는 무인자동차, 드론, 수술용 로봇, 피트니스 관련 서비스 등인데, 흔히 IoT는 무선인터넷과 연결되는 휴대용 기기를 통해 개인의 생활 습관과 행동 데이터를

있다. 무진사보험은 진사의 생략에 따른 보험계약 절차의 간소화와 경비절감에 장점이 있으나, 무진사에 따른 위험을 정확히 관리하지 못할 경우 그 장점이 상쇄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금액·가입연령·보험기간 등을 제한하고 계약적부확인 절차를 엄밀하게 거침으로써 무진사보험이 초래할 수 있는 역선택의 문제를 방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무진사보험은 청약자와 실제로 대면하고 피보험자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모집인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하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95127&cid=40942&categoryId=31831>> 참조.

활용해 개인에게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⁷⁾ 이에 따라 새로운 보험상품 및 판매채널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IT기업들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 육성과 시장영향력 확대를 위해 주로 딥러닝 기술 위주의 인공지능 기술을 공개하는 추세이며, 공공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 공개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딥러닝 기술을 통해 이미지, 음성, 비정형화 텍스트를 처리하는 인지기술의 발전은 보험회사가 실시간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보험금지급을 용이하게 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은 보험모집인의 역할과 판매채널 변화, 언더라이팅 및 보험료 산정, 보험금 지급업무와 같이 기존 보험회사의 중요한 업무들에 있어서 점진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개 업무가 앞으로는 축소될 전망이지만, 마이데이터 산업과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 접목된다면 기존에 보험모집인의 역할이 선진화할 가능성이 높다.⁸⁾ 즉, 보험모집과 보험계약 체결을 진행했던 임무에서 상품 교육이나 위험예방 등 다른 역할로 일부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보험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고객 확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감소할 수 있는 동시에 그동안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 판매에 대한 위험도 줄일 수 있다.⁹⁾ 챗봇을 통해서 많은 유형의 보험을 판매할 수 있으며 보험 포트폴리오 관리와 같은 대면서비스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인공지능 기술은 최초 설계자인 보험사업자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므로 소비자 측면의 권익 향상보다는 보험사업자 주도의 정렬을 우선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과거병력, 신용상태, 보험금 지급사실 등과 같은 기존의 데이터를 통해 계약자를 구분하여 보험계약을 인수하거나 보험료 측정 시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보험업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활용되는 모든 영역에서의 위험으로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소외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¹⁰⁾

7) 이회옥, “빅데이터 환경에서 보험업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소비자문제연구』 제50권 제2호, 2019. 8, 147~148면.

8) 텔레매틱스 및 가정용 IoT 보급 확대, 보험회사의 인공지능 활용 증가 등으로 위험 식별 및 가격산정 알고리즘이 정교화됨에 따라 더 넓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상품을 실시간으로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채원영, “인공지능이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2018. 6, 26면.

9)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보험회사는 종목별, 상품별 보험료 산정 및 언더라이팅 모형을 정교화하고, 각종 데이터 및 고객의 의사결정에 기반한 실시간 보험료 산정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채원영, 위의 보고서, 26면.

5. 소결

보험회사의 수익구조가 악화되면,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되므로 결국 보험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2022년 예상된 IFRS17의 적용은 보험사업자의 수익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단기적으로는 보험업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인구 감소와 고령자의 급증이 예상되므로 보험료가 높은 유병자보험 등과 같은 보험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험사의 수익구조를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민영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사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및 비급여 구조를 악용한 보험금 청구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그 어려움은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빅데이터, 인공지능기술, 블록체인, 의료기기, 웨어러블기기, 정보통신기술 등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보험사 헬스케어서비스의 활용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보험사가 헬스케어서비스를 강화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고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재활에도 적극 관여하게 되면, 보험사의 수익구조에 긍정적이다. 이를 전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볼 경우, 단순히 특정 업권의 이익 확대 차원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를 완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므로 헬스케어서비스의 도입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

Ⅲ. 빅데이터 경제 3법의 개정 동향

1. 개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데이터를 생산해 내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내고 있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 산업의 성패가 좌우되므로 정부 정책도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개인의 유전자·질병·진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섭취하는 음식, 일상적인 생활 습관 등을 종합하면 의료처방과 맞춤형 복지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유인해 내기 위한 개인의료정보의 활용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10) 이희욱, 앞의 논문, 148면.

데이터는 다량의 정보를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 패턴으로 분류하고 이를 기초로 생활의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 이미 우리는 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은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으며 향후 정보의 데이터화(化)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딥러닝을 통해 자기학습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는 필수이며, 개인별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한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이 우리 실생활에 점점 구현될수록 보다 광범위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경쟁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의 특성상 광범위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신용정보와 관련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의 규제를 받는다. 다수의 데이터는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활용되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되어 개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엄격한 통제하에서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활용될 수 있다면, 과도한 규제보다는 적극적인 활용에 정책의 주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단순히 데이터 활용이 우리나라에서만 국한된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가 추구하는 공통된 관심사이므로, 정보의 국외이전(역외이전) 등 향후 정보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분쟁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즉,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산업적 측면이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가장 민감한 정보인 개인의료정보를 치료나 건강관리 및 유지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수년간 데이터 활용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데이터 관련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에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심의 중이다. 빅데이터 경제 3법¹¹⁾으로 불리는

세 법안의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이다. 데이터의 보호보다는 활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준비되었으므로, 향후 이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결합이 가능해 질 것이다.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개인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빅데이터 경제 3법의 개정 동향을 살펴본다.

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논의

(1) 개인정보의 개념 명확화

그동안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논의가 오랜 기간 이루어져 왔고,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40건이 넘는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통합 심의되고 있다.¹²⁾ 특히 인재근의원안은 개인정보에 관한 정의부터 처벌규정까지 다른 기타 개정안에서 부분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 전부개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¹³⁾

우선 효율적인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개별적인 개인정보를 결합했을 때 가능해지므로 “다른 정보와의 결합의 용이성”이 핵심 사항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재근의원안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분명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고 하여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한편, 개인정보와 구별되는 개념인 익명정보는 “시간·비용·기술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의

11)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데이터 활용의 관점에서 “데이터 3법” 또는 “빅데이터 경제 3법” 등의 용어로 함께 사용했는데, 2019년 3월 당·정·청 협의 이후 상기 3개의 법률을 “빅데이터 경제 3법”으로 부르기로 하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국회 ‘빅데이터 경제 3법’ 처리 지연, 빅데이터 산업 때 놓치나, 2019. 3. 25.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19986>.

1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67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19. 4. 참조

13)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상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총 49건이다. 이 중에서 단순 자구 수정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검토 법안은 20여 건이 채 되지 않는다[2019년 9월 1일 기준, 행정안전위원회<<http://adminhom.na.go.kr/adminhom/index.do>>].

적용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¹⁴⁾ 따라서 익명정보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고 본다.

아울러 가명정보도 주요한 개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가명정보는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정보”로서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한다. 가명정보가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가명정보¹⁵⁾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산업적 활용도 가능하다.¹⁶⁾ 여기서 과학적 연구는 기존의 학술연구 범위에 한정하지 않으며 신상품 개발을 위한 시장분석과 소비자 선호도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명정보의 활용과 관련하여 EU GDPR의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여진다.¹⁷⁾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대상으로 개인정보와 가명정보를 분명히 하고, 익명정보를 배제함으로써 개인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넓혀 놓았다.

(2) 개인정보 활용의 편의성 제고

인재근의원안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당초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안정성 확보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추가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⁸⁾ 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처음 수집된 목적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14) 김나루,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익명화 또는 비식별화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5권 2호, 2019. 8, 140면.

15) 개인정보 및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명시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수법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대하였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보호대상에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가명정보도 포함시키고, 구별 개념인 익명정보를 분명하게 배제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16) 김나루, 앞의 논문, 156면.

17) EU GDPR 서문(26), 제5조, 제89조에 의하면, 가명정보를 공익기록, 통계작성 및 과학·역사연구 목적으로 처리 허용하고 있다. 과학적 연구의 대상에는 첨단기술 개발 및 실증, 제품 및 서비스 연구개발, 소비자 기초분석 등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하다.

18) 인재근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의안번호 2016621. 제17조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주체에게 과도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비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재근의원안은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자간 정보집합물의 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¹⁹⁾ 개인정보의 단순한 제공보다는 데이터로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본래 개정안의 취지로 볼 때, 정보집합물 간 결합 근거의 마련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분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유롭게 형성된 빅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그 자체의 내용보다는 결합과 추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 유의미한 활용이 가능하다. 현행법상으로는 데이터 결합에 관한 근거가 없어 그동안 이용자들은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산업적으로 활용하여 왔기에 법적 분쟁이 적지 않았다.²⁰⁾ 수범자 측면에서 볼 때, 데이터 결합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산업의 추진 시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시장혼란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활발한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산업별로 적용법규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실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직 단일화

여러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보호 조직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단일화 하는 문제가 쟁점이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의 논의 과정상 조사 제재권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한 이견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²¹⁾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통령직속의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로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²²⁾하지만 개인정보에 관한 개별 집행기능은 개인정보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담당한다.

예컨대, 행정안전부가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총괄기능을 맡고

19) 인재근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의안번호 2016621. 제28조의3 제1항.

20) 이태일리,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고발건, 검찰 무혐의 처분..빅데이터 활성화 물꼬, 2019. 4. 1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5464662245136&mediaCodeNo=257&OutLnkChk=Y>>.

21) 2019. 10. 1.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www.pipc.go.kr/cmt/int/acs/workIntroduce.do>> 참조

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분야를, 금융위원회가 금융 및 신용분야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분야를,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분야의 집행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관련 집행이 개별 기관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실질적인 총괄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 따라서, 향후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인정보 관련 기능과 조직을 일원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도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관할 하에 있으며, 인사와 예산 권한을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여 독자적인 인사 및 예산권을 부여하고, 조사 및 처분권과 같은 집행권도 보유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 차원에서 행정각부를 통괄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를 개편하고자 한다.

(4) 처벌규정 강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가 개인정보의 활용 강화에 있으므로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 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 시 특정개인을 알아보는 행위 금지의무 및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의 3%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²³⁾

3. 신용정보법 개정안 논의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종합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대한 소비자가 설명요구권 등이 보장되어 있다. 또한 금융분야 데이터

23) 인재근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의안번호 2016621. 제28조의5 및 제28조의6의 참조

활용과 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금융분야 정보보호 내실화를 위해 정보활용동의서의 등급제, 프로파일링 대응권²⁴⁾ 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의 해커톤 회의,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 토론회 등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이어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데이터 활성화 규정은 의미가 있다.

(2)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육성 방안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일반법으로 기능한다면, 신용정보법은 금융에 관한 데이터 활용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개별법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업무의 실질에 맞추어 신용조회업을 개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로 구분하고 자본금 등 진입규제를 정비하였다. 여기에 새로운 금융 산업의 출현에 대비하기 위하여 금융데이터 산업 참여자 기반을 마련하였다. 즉, 정보주체가 권리행사를 할 경우에 본인정보를 통합하여 조회하고,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는 등 신산업을 발굴하였다. 이 때 통신료, 전기·가스·수도요금 등과 같은 비금융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 정보 전문 CB사의 설립을 허용하기로 하였다.²⁵⁾ 이와 같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기본 목적은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정보주체인 본인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며 이를 통해 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데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개인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신용도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할 수도 있다. 또한 개인 맞춤형 재무컨설팅도 가능하여 재무 위험 등을 줄일 수 있다. 즉, 개인이 스스로 금융 및 신용 정보를 관리하여 자산관리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시켜 줄 것이다.

24) GDPR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 프로파일링 대응권은 정보주체 자신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만 근거한 결정을 따르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GDPR Article 22 Automated individual decision - making, including profiling 1. The data subject shall have the right not to be subject to a decision based solely on automated processing, including profiling, which produces legal effects concerning him or her or similarly significantly affects him or her. 이하 손도일/김나래, “국내 금융회사에 GDPR이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전자금융과 금융보안』 제10호, 2017, 15면.

25) 김병욱의원 신용정보법 개정안, 의안번호 2016636. 제2조 제8호의2 및 제5조 제2항 등 참조.

(3) 개인신용정보 보호 강화와 활용 근거 제시

거버넌스 개편을 통한 개인의 신용정보 보호 강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의 활용이 주요 개정사항이다. 우선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는 상거래 기업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조사·제재 등 법집행에 관한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보호체계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유사 및 중복 규정을 명확히 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추어 정비하였다. 즉, 그동안 기능적으로 분산되어 있었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한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이를 기초로 정책설정과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한편, 개인정보 중에서도 신용정보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업무의 전문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관련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고, 아울러 전문 인력의 이전 등을 통해 조사와 제재의 단일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특히, 개인정보의 활용에 주안점을 둔 근거 규정을 마련한 점은 의미가 있다. 금융분야의 경우 상시적인 정보보호가 이루어지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활용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즉, 데이터 결합 및 적정성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의 지정절차와 수행 가능한 업무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익명조치에 대한 적정성 평가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고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익명정보로 추정하여 활용가능성을 확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대통령령 등으로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²⁶⁾

(4)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범위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도 통계작성 및 연구 목적의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의 원래 목적외 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때의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과

26) 김병욱의원 신용정보법 개정안, 의안번호 2016636, 제42조의2 및 제50조 제2항 등 참조

그리고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²⁷⁾ 그러한 요건으로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고 i)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ii)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²⁸⁾

그러나 위와 같은 제한적 허용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의하면 정보처리자가 아닌 정보주체가 상충가능성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는 정보처리자가 목적외 이용으로 이익을 얻음에도 오히려 개인정보주체가 증명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정보주체의 보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앞에서 논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보다도 목적외 제공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GDPR이 목적외 처리를 허용하면서 당초의 수집 목적과의 “양립가능성”을 요건²⁹⁾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상 “상충가능성”의 존재 요건은 그 효과 측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리하다고 본다. GDPR 법제 하에서는 목적외 처리에 있어서의 목적이 원래의 목적과 양립가능한지의 주장과 증명은 적극적으로 정보처리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에서의 원래 수집 목적과 “상충”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의 해석을 GDPR과 같이 원래의 수집목적과의 양립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혀 해석할지에 대한 적용상의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의하면, 정보처리자의 목적외 정보의 이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정보의 유출 등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정보처리자에게 부여하는 등의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27) 김병욱의원 신용정보법 개정안, 의안번호 2016636. 제32조 제6항 제9의2호.

28) 김병욱의원 신용정보법 개정안, 의안번호 2016636. 제32조의 제6항 제9의4호 참조.

29) GDPR은 학술연구나 통계 목적을 위한 정보처리를 해당 정보에 관한 원래의 목적과 양립가능한 적절한 처리로 간주한다[Recital 50(4)].

4.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논의

(1) 법제정비 및 체계효율성 강화

이번 빅데이터 경제 3법의 기본 개정 기초가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강화에 맞춰져 있는데, 정보통신망의 경우에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법제정비와 체계효율성을 위한 조문이 추가되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되는 정보통신망법 제4장과 제재규정을 삭제하였다.³⁰⁾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이한 제재규정(과징금과 벌칙)과 행위규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례 등으로 규정한다. 여기에는 정보의 국외재이전과 국내대리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및 차단, 이용내역 통지제도, 유효기간제도, 재위탁동의 등 개별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기타 정보통신망법상 애집근권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국내대리인관련 일부 조항은 존치하였다. 또한, 고시에 따르도록 한 주민정보처리 사항을 법률에 규정 하도록 하도록 하는 등 보완조항을 마련하였다.

(2) 신산업 발전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주요 개정 내용

정보통신망법 이외에도 개인 또는 사물의 위치와 관련된 위치정보법과 개인정보 보호 사항이 담긴 방송위설치법 일부개정 내용도 담겨있다. 위치정보법의 위치정보 사항 중 개인의 위치정보보호에 관한 기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됨으로 그 소관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병기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면 자료제출요구, 이용약관 변경명령, 위치정보 보호조치 점검,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각각 독립적으로 담당하게 된다.³¹⁾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및 조사제재 기능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의 허가와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긴급구조목적의 위치정보 이용, 위치정보산업의 활성화 등을 담당하게 되어 그 기능이 축소된다.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분산되어 있었던 개인정보보호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여 효율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30) 노웅래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안번호 2016622. 참조.

31) 노웅래의원 위치정보법 개정안, 의안번호 2016620. 제3조 및 제12조, 제16조 등 참조.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은 4차 산업혁명 주요기술인 자율주행차 및 드론과 같은 지능형 모빌리티의 활용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개인정보보호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법상 중복 규제를 받는 등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³²⁾ 향후 개별 법률 간 충돌을 방지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5. 소결

빅데이터 경제 3법의 개정으로 개별 빅데이터 산업의 실질적인 발전과 같은 입법효과를 즉시 기대하기는 어렵다. 빅데이터 경제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일반 규정의 개선안에 불과할 뿐이다. 이러한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기반으로 개별 산업별 활용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먼저 개인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신산업 육성을 도모할 수 있는 별도의 일반 빅데이터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보건의료, 금융경제 등 대부분의 사회 및 경제활동 영역에서 생성되는 빅데이터의 확보에 산업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또는 침해가능성을 과도하게 주장하다가는 정작 필요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질병의 진단과 치료, 자율주행차의 운행, 핀테크의 발달에 있어 다른 국가보다 뒤쳐질 수밖에 없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 특히 보험 분야의 경우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 취급에 관한 사항”을 보험업법이나 신용정보법 등 개별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 보험업은 개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금융정보를 포함한 신용정보 등 방대한 개인정보를 처리·보관해야 하는 영역이며,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더 많은 개인정보가 보험영업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기에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32) 김민호 외 6명, 「개인정보보호 규제 합리화 방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 보고서, 2013. 11, 31~32면 참조; 지디넷, 개인정보보호 중복규제, 업종별로 교통정리, 2016. 4. 18. <<http://www.zdnet.co.kr/view/?no=20160418163229>>.

본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활용 과정에서 추가적인 동의 없이도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활용이 가능한 점, 빅데이터 경제 3법의 조치에 대한 제재를 일원화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확대와 적절한 개편 등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빅데이터 활용 기반이 공고해지리라 본다.

IV. 헬스케어서비스에서의 개인의료정보의 보호와 활용 방안

보험업계에서 운용 중인 정보통합시스템은 마이데이터 산업의 활성화 정책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며, 국민 건강보험공단 등이 축적하고 있는 개인의료정보 역시 정보주체의 통제 범위에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 마이데이터 산업 정책, 개인의료정보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1.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의 문제점과 과제

(1) 개요

2007년 경 생명보험업계는 각 생명보험사가 관리하는 보험계약을 통합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생명보험협회가 2016년 중반까지 이 시스템을 운용하였다.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Korea Life Information Check System, 이하 “KLICS”)은 보험계약에 대한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구축된 정보공유시스템으로 보험계약자 등의 역선택, 즉 부당보험금 지급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KLICS는 생명보험사의 보험인수, 클레임 업무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개인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능력정보와 같은 보험계약정보를 이 시스템에 집중하여 공유하였다.³³⁾ 보험사업자는 KLICS를 통해 보험계약에 관련한 정보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정보를 개인별로 관리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³⁴⁾

33)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참조<http://www.klia.or.kr/order/order_09.do>; 이희욱, 앞의 논문, 143면.

34) 고학수, 「개인신용정보의 공유와 보호의 한계에 대한 최적화 구조 연구」, NARS 정책연구용역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14. 10, 39면; 이희욱, 위의 논문, 143면.

KLICS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별 생명보험사업자는 각 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계약정보를 가공하여 자신들의 정보시스템에서 생명보험협회로 전송한다. 생명보험협회는 그 정보들을 집적해 데이터형태로 보관한다. 그리고 전체 생명보험사가 고객들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열람하거나 전송해 줄 수 있는 형태로 활용한다.³⁵⁾ 전체 보험사의 정보를 집적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기에 전체 보험계약자의 계약정보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KLICS에서는 웹조회 방식, 전문조회 방식, 파일 제공방식으로 계약자의 보험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집적된 개인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별 보험사가 별도로 계약정보를 관리하던 과거와 비교할 때, 정보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할 것이다.³⁶⁾

(2) KLICS의 문제점

보험사업자 등의 고객 정보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는 통합적인 보험계약 정보를 제공하는 KLICS의 기능이 효율적이지만, 정보주체의 입장에서는 계약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몇 년 전 유명 보험회사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보험개발원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이 시스템의 취약점을 노린 대표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례들이다.³⁷⁾ 보험계약정보는 보험계약 관리에 필요한 범위 이외의 것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계약정보가 정보주체의 인식 없이 수집되거나 동의 없이 유출되었을 경우에 고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침해받게 된다.³⁸⁾

고객의 계약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건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 관련 사고는 비록 배상액은 적지만, 피해자의 수가 많은 것이 대부분이므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에게도 보험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35) 이희욱, 위의 논문, 143면.

36) 이희욱, 위의 논문, 143면.

37) 매일경제, 보험정보 800만건 뚫렸다..보험개발원·협회 중장제, 2013. 11. 2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3/11/1175971/>>.

38) 이희욱, 앞이 논문, 144면.

유리하다.³⁹⁾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상품을 정책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간다면, 해당 보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도 있겠거니와 나아가 보험회사들이 계약자들에 대하여 개인정보 사고를 모니터링 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일응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담보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자칫하면 해당 보험 가입 그 자체만으로 보험사업자들을 면책시키는 제도에만 그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⁴⁰⁾ 보험사업자는 최초 수집된 보험계약정보에 한해서 보험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의 제공·수집에 관한 동의서를 통해 적법한 동의를 받았다고 항변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 번의 사전 동의를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모든 권리가 위임되거나 포기되는 것은 아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계속적 보관·활용에 대한 모든 행위가 계약 시 동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⁴¹⁾

(3) KLICS의 과제

KLICS와 같은 개인의 보험계약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의 KLICS에 대한 접근권을 열람자에 따라 차등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정보주체 또한 자기의 정보를 누가 어떻게 조회하고 제공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⁴²⁾ 예컨대, 열람자가 특정 개인의 민감정보를 조회하거나 다운로드

39) 박경희·임예진·신정순, “보험산업의 개인정보보호 법제관련 사례연구”, 「유라시아연구」 제14권 제3호 통권 제46호, 아시아 유럽미래학회, 2017. 9, 100면.

40) 박경희·임예진·신정순, 위의 논문, 100면.

41) 헌법재판소 2005. 5. 26. 99헌마513, 주민등록법 제17조8 등 위헌확인 등.

42) 이희욱, 앞의 논문, 145면.

만약 활용했을 경우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익 침해와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책임은 열람자에게 우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열람자가 누구이고 어떤 내용을 조회했는지 그리고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 했는지 등을 정보관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실시간으로 문자, 이메일과 방식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의 구축과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할 경우, 일반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계약정보를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은 가능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의 확인이 없더라도 보험사업자가 정해진 시기별로 보험계약 정보의 활용에 대한 결과를 적절한 방법으로 알리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보험약관에 규정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⁴³⁾ 통상적으로 헬스케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보험계약 정보가 활용될 경우와 보험계약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별도의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등 마케팅에 활용되는 경우에 문제가 제기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의 경우에 활용된 계약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한 허용될 것으로 보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있었는지 그리고 동의가 없었다면 실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따라 정보 열람자 등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마이데이터 산업의 주요 내용

(1) 도입 배경

보험에서의 개인정보 문제는 계약과정에서부터 보험상품이 운용되는 과정, 수익자 등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보험계약통합관리시스템인 KLICS은 보험사업자의 편리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주었으나, 계약자나 수익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 증진 차원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오히려 후퇴된 측면이 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KLICS와 같은 금융통합시스템은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증대시키려는 목적에서 관련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빅데이터 논의를 집중하였기에 가능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통합서비스가 문제없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활용의 공공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

43) 이희욱, 위의 논문, 145면.

정보의 주체가 자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인 정보 접근권 또는 열람권과 개인이 스스로 자기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정보주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도입해야 된다는 논의가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⁴⁴⁾

(2) 개방형 정보공유시스템

마이데이터 산업은 기존에 금융회사에 집중되었던 금융정보에 대한 관리, 통제하는 권리를 계약당사자, 소비자에게 넘겨오는 것을 그 취지로 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과거에 사업자만이 독점하던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와 신용정보, 거래 정보 등 통합된 금융관련 정보 정보데이터를 개방된 시스템을 통해 고객에게도 접근권한을 주고, 보다 적극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도입되는 서비스는 개방형 시스템으로, KLICS와 같은 폐쇄형 정보공유 시스템과 달리 인터넷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에게 개방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인터넷네트워크로 연결된 정보대중화시대의 사회구조에서는 일반 시민이 종래 소수 권력자에 의해 독식되었던 정보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이용·관리하고 거기서 새로운 가치를 재창출한다.⁴⁵⁾ 이러한 관점에서 보험 분야에서 계약정보 등을 주로 집적한 시스템에서 일반고객이 참여자로 등장한 것은 늦은 감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정보주체인 일반 고객이 자기 정보에 상시적으로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보험업에서도 신기술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다.

특히, 마이데이터 산업은 정보주체가 자기의 신용정보와 금융정보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되므로, 데이터 주권이 금융소비자에게 이전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이미 EU나 미국에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들이 고객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형식으로 자리매김하였다.⁴⁶⁾ 미국은 세계적인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핀테크 분야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44)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보도자료, 2018. 7. 18.

45) 이희옥, 앞의 논문, 144~145면; 이민영, 「정보인권의 규범구체화」,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341집, 집문당, 2013, 19면 참조

46) The Economist, “An earthquake in European banking - New payments regulation has the potential to shake up the banks”, 2017. 3. 23. <<https://www.economist.com/finance-and-economics/2017/03/23/an-earthquake-in-european-banking>>.

미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민간 차원에서 금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으며, 금융데이터 제공에서 차별전략을 통해서 핀테크 업체들이 상호 경쟁하고 있다.⁴⁷⁾ 이러한 미국의 행보로부터 인상적인 점은 기업입장에서 소비자의 금융정보 및 신용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입장으로 제공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결국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기업 스스로의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3) 개인정보의 자기 통제

우리나라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를 한 마디로 특정할 경우 “정보주체의 개별적 사전 동의에 기반한 형사처벌 위주의 경직된 보호체계”로 규정할 수 있다. 개인데이터 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심각하게 균형을 잃은 법제이다. 유럽 연합(EU)이 1995년의 개인정보보호지침(DPD)을 개정하여 보호를 더 강화했다고 평가받는 일반개인정보규칙(GDPR)보다도 더 강력한 동의 기반의 사전규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⁴⁸⁾

오늘날 우리 금융당국은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체제가 금융산업을 저해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금융산업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는 i)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를 일괄 수집해, 정보주체가 알기 쉽게 이를 제공하고 해당 개인정보가 본인의 명확한 의사에 따라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통제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ii) 상품 정보제공·비교공시를 통해 소비자보호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모든 금융상품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비교 분석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권을 강화하고, 기존에 정보의 우위에서 일방적으로 이익을 추구했던 기업의 행태들을 시정하고, 소비자 만족에 기반 한 시장경쟁을 활성화 하는 것,

47) 2017년 기준 상위 5개 마이데이터 관련 업체의 연간 매출액이 65억 달러를 돌파했고, 대표적인 미국의 신용 점수 제공 서비스인 크레딧 카르마(Credit Karma)는 2008년 서비스 론칭 후 6년 만에 유니콘 기업 반열에 오르며 기업가치 35억 달러를 달성했다. 크레딧 카르마의 이용자는 트랜스 유니온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하고 개인의 신용 점수에 맞는 금융 상품을 추천받기도 하고 세금신고서 작성 서비스도 제공받는다.

48) 이인호,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동의제도에 대한 비판적 분석 - 잘못 설계된 동의제도 -”, 2019 개인정보보호 포럼 정기토론회, 2019. 10. 1, 1면 및 8면.

iii)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과 신용관리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해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는 것, iv) 금융분야에서 정보보호와 소비자보호를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구조를 마련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4) 보험업의 발전 가능성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으로 보험업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 것인가? 기존의 보험은 여타의 금융분야 중 가장 어려운 영역이기도 했다. 그래서 보험 분쟁의 대다수가 설명의무와 고지의무, 계약보장 내용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로부터 비롯된다. 또한 보험모집인의 권유로 쉽게 가입한 보험들이 무엇을 보장하고 있는지, 중첩되는 경우에 얼마만큼의 보험사고에 보장을 받게 되는지도 고객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고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보험 분야에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보험계약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편하게 볼 수 있고, 보험계약에 대한 보장내역 등에 대해서 쉽게 비교 분석할 수 있다. 보장내용이 중첩되거나 본래 목적에 대비해 과하거나 또는 부족 시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시기별로 어떠한 지에 대해서도 계약자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 고객정보를 무단 변경해 거액의 보험대출을 통해서 편취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계약자가 계좌정보나 연락처와 같은 자기 정보의 변경된 사실과 그 내용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거나 관련 정보 변경 시 정보주체에게 즉시 연락이 갔다면, 이와 같은 허무맹랑한 사고는 사전에 조치를 취했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⁴⁹⁾

지금은 성장이 정체되어 있지만 변액상품과 같이 고객입장에서 쉽게 투자환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에 있어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해당 상품의 선택과 유지를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개방형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 고객의 투자패턴이나 소비패턴을 비교 분석하여 보다 좋은 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 기존에 불필요한 광고나 과도한

49) 2017년에는 일반에게 접근이 제한된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에 있는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금 청구이력, 사고일시 및 내용, 치료 내역 등의 데이터를 특정보험사가 해당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 대상이 아닌 보험 설계사에게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공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한국경제, 보험사, 고객동의 없이 질병 정보 설계사에게 제공, 2018. 1. 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1161959Y>>.

보험상품 권유로 인한 피로감을 보험사업자와 고객 간에 덜 수 있으며, 고객의 입장에서 제공한 금융정보를 통해서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한편 마이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금융회사에 있는 고인 명의의 예금·보험·주식·채권 등 모든 금융자산과 대출·보증·카드대금 등 각종 채무를 상속인들이 알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채납정보까지 알려준다.⁵⁰⁾ 오히려 전산화된 통합정보의 활용은 생존한 사람들에게 보다 더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도 잘 알지 못하고 어떤 상품에 투자되고 운용되는지도 잘 알지 못한 채 퇴직연금이 자신의 노후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만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용점수 및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며 위와 같은 신용등급이 나온 근거는 무엇인지? 그와 같은 판단에 잘못은 없는지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므로, 앞으로 이런 정보들이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해 준다면 개인들의 자금운용과 미래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5) 검토

정부 주도로 2018년 7월 도입이 결정된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고객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서 자신의 금융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신용정보 등을 이용한 재무건전성에 관한 서비스를 받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형태로 실현될 것이다. 보험산업은 이미 통신판매업과 방카슈랑스 사업 등으로 상품 판매채널이 확대되어 제3자와의 교류가 활발해짐으로써, 어떤 분야보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구도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기에 적합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보험사업자들은 보험계약 정보를 비롯한 계약자의 개인정보를 체계화하고 해당 정보를 고객에게 공유하면서, 고객에게 맞춤형 형식의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저변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서 찾을 수 있다. 기술의 발전은 더 많은 정보데이터를 요구하므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심화

50) 한국경제, [김도형 변호사의 금융·보험 바르게 알기 (17)] 정부, 금융분야 마이데이터(My data) 산업 도입방안 발표, 2018. 8. 9.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08095549i>>.

될 수 있다. 그러나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그동안 소외되어온 금융거래의 계약자인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시도이기도 하다.

3. 보험업에서의 개인정보의료정보 활용 방안

(1) 서언

보험회사의 헬스케어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료정보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먼저 마이데이터 산업이 본격 도입되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계약 정보를 KLICS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의 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계약 관련 정보를 통제의 범위에 넣을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국의 의료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의료정보를 국민개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통제 범위에 들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개인의 건강정보는 바이오 빅데이터의 범주에 포함된다. 바이오 빅데이터의 범위에는 i)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검진, 처방 시 작성된 의료(임상)정보 및 전 국민의 건강보험정보, ii) 유전체 등 인체유래물 정보, iii) 개인의 생활습관 등의 건강생활정보가 포함된다.⁵¹⁾ 특히 우리나라는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보급률 세계 1위, 전국민 건강보험정보 확보, 총 189개의 유전체 검사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⁵²⁾ ICT기술이 발달하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 기술적으로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건강보험공단 등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의료정보 역시 국민개개인이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정보관리는 정당한 정보의 주체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해당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 시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모바일 앱을 통한 정보의 전달이다. 이는 정보주체가 향후 스마트 계약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연구기관 등에 제공한다거나 자신의 질병 치료,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51) 심미량/심현주,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한 의료정보 활용의 법적 쟁점”, 「산업재산권」 제58호, 2019. 9. 20, 4면.

52) 최수진, “신산업 창출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산업 플랫폼”, KISTEP 수요포럼 발표자료, 2018, 23면; 심미량/심현주, 앞의 논문, 4~5면.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헬스케어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려할 여러 사항 중에 이 글에서는 개인의료정보의 활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먼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 즉 웨어러블기기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유전자 검사 관련된 보험업법상 쟁점을 살펴 볼 것이다. 이는 보험계약자 등의 건강생활정보와 유전자정보를 파악하여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이어서 병원, 의원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의료기록 등 개인의료정보를 왜 표준화하고 그러한 방법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의료기관 등에서 생성된 개인의료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정보와 왜 결합해야 하는지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 방법 및 개인의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의 제공 범위의 확대

헬스케어서비스는 질병예방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는데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의료서비스 영역으로 볼 수 있다. 헬스케어서비스는 기존의 치료 중심 서비스와는 다른 예방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는 이미 질병이 발병한 이후의 건강 유지와 관련된 부분도 포함된다. 질병이 발생한 이후 행해지는 신체의 침습 등 여러 형태의 구체적인 의료행위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 질병의 예방행위 등도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영역 속에 포함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 실질적인 헬스케어서비스의 한계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웨어러블기기를 활용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생활습관을 체크하는 것은 물론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진단이외의 건강관리는 허용되고 있다.

보험회사는 웨어러블기기와 헬스케어서비스를 연계하여 보험요율 조정 등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한도가 3만원이어서 웨어러블기기의 실질적인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2019년 7월 이후 10만원 한도까지는 가능해져 헬스케어서비스를 다소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건강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그 금액도 줄일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개인 유전자 검사를 통해 보험계약자 등의 인간 유전체(genome, “게놈”)

지도를 파악한 후, 웨어러블기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건강생활정보와 결합하면,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헬스케어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특별이익 제공의 범위를 10만원으로 한정하기보다 유전자 검사를 보험계약의 내용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선택적으로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보험회사의 보험인수 조건으로 유전자 검사를 의무화하거나 헬스케어서비스 관련 보험 상품에 한정하여 특별이익 제공의 한도를 2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⁵³⁾

(3)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통제권 강화

인공지능 기반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되면, 보험계약자 등의 정보주체를 개방된 네트워크에 참여시킴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민감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 수집과 제공을 고객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취해온 계약거절, 지급거절과 같은 거래상의 불이익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다. 보험사업자도 건강정보 및 신용정보와 같은 고객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해 냄으로써 개인의 관심과 신용상태에 적합한 보험·금융 상품을 권유할 수 있을 것이다.⁵⁴⁾

EU의 GDPR은 소비자의 정보통제권 강화 규정을 포함한 법제의 일원화 방식을 도입하여 정보주체의 정보통제권을 강화하였다.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에 기반한 보험계약정보제공 시스템상의 정보 알고리즘이나 설계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데이터를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⁵⁵⁾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관련 규제는 사전적 규제방식이 사후적 규제보다 효율적이다. 보험업도 빅데이터에 기반 하므로 동일한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보험업의 개인정보보호 규제도 자율규제구조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⁵⁶⁾ 예컨대, 특정 보험사 내에서 정보관리자가 아닌 직원이 보험

53) 김영국, “헬스케어와 보험업법상 쟁점 - 헬스케어서비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경영법률』 제29집 제2호, 2019. 1. 31, 91면 참조

54) 이희욱, 앞의 논문, 137면.

55) 이희욱, 위의 논문, 138면, 153~155면 참조

56) 이희욱, 위의 논문, 138면, 157면 참조

계약자 등의 계약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열람 시간, 조회 방식, 파일 다운로드 여부 등 관련 내용이 빅데이터 시스템에 기록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의 국가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선진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초고령 시대에 대비한 의료비 상승 억제 및 의료 품질 개선 등을 목표로 디지털 헬스케어기기와 의료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전략을 발표 하고 있다.⁵⁷⁾ 특히 개인의료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에게 정보의 통제권이 주어지고, 연구와 개발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비식별화 작업을 거쳐 익명화한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4) 의료정보의 표준화 및 공유 방법의 개선

1) 의료정보의 표준화·공유 현황 및 법적 한계

우리나라는 전자의무기록(EMR) 보급률이 높고, 전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의료정보의 대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집적되어 있다. 그리고 병원 등 의료기관이나 보험업권에서 각각 개인의료정보, 피보험자의 계약 및 사고정보들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민의 진료내역, 건강검진, 의료급여 등 의료이용내역을 상세히 추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질병관리본부 등도 급여비용, 평가정보, 의료자원, 영양조사결과 등 핵심적인 의료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공공기관 외 의료기관에서는 전자의무기록 및 영상의료전달시스템, 처방전달시스템을 통하여 진료정보부터 처방정보까지 세부적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권은 보험개발원과 신용정보원을 통하여 건강정보 및 신용정보를 추적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민간 의료기관 간에는 의료정보가 제한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문제, 의료정보 데이터의 표준화 필요성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의료정보를 병원 외부로 반출할 수 없는 문제(의료법 제19조 등), 생명윤리법 제3장 인간대상연구 및 연구대상자 보호(제15조~

57) 박정원/심우현/이준석,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제25권 제1호, 62면.

제19조)에 따른 인간 대상 연구의 제한, 생명윤리법 제5장 인체유래물연구 및 인체유래물은행(제36조~제40조)에 따른 인체유래물 연구의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제15조~제22조)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의 제한 등과 같은 법적 규제에 의해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⁵⁸⁾

2) 주요국의 의료정보 관리 체계

세계 주요국은 의료·건강기록의 표준화 및 보호·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도 우리보다 앞서고 있다. 우선, 주요국들은 전자의무기록(EMR)의 표준화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자건강기록(EHR), 그리고 이를 다시 개인이 생성한 건강정보인 개인건강정보(Personal Health Information, PHI)와 통합한 개인건강기록(PHR)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원격의료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여 환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함께 건강정보를 얻고 이를 환자의 의료기록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의료정보의 보호에 관해서도 많은 세계 주요국이 우리와는 다르게 비식별 정보에 대한 관리를 지침 수준에서가 아니라, 법률 단위에서 규정하여 비식별화된 의료정보의 관리·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정보의 투명한 활용을 위해 비식별 의료정보라고 할지라도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⁵⁹⁾

3) 의료정보의 공유 및 통합 방안

의료분야에서 치료 및 건강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민간 의료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고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여 빅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미국은 HIPAA를 통해 민간업체의 헬스케어서비스 시장에의 진입을 완화하고 의료정보에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정보가 자유롭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및 의료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의료정보,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정보 처리에 있어 비식별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정보보호를 위한 방안을 명확히 하고 있다.

58) 심미량/심현주, 앞의 논문, 11~12면.

59) 박정원/심우현/이준석, 앞의 논문, 67면.

의료정보의 통합 및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정보의 대부분을 보유한 공공기관 중심의 정보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기술적 차원에서는 분산된 정보들을 통합할 수 있는 단일 플랫폼이 필요하다. 법제도적으로는 정보의 통합 및 활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현행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나아가 의료 빅데이터를 추진하는 기반이 될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신용정보법 제16조에서는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업무 이외의 개인 질병 정보의 이용은 허용하지 않고 있어 헬스케어서비스가 보험계약업무에 포함되는지 해석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개인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 개인건강정보를 목적과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간의 충돌해소를 위해서는 일원화된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개선방안을 통해 헬스케어서비스가 보험산업에 성공적으로 도입 될 경우 보험회사는 의료 빅데이터를 통하여 피보험자의 개인상태에 따른 맞춤형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최적화된 보험상품 개발, 언더라이팅, 보험금 지급심사에도 활용할 수 있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 할 수 있다.

(5) 의료정보의 유출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

전자의무기록(EMR)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정보는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생성 및 보관은 주로 의료기관에 의해 행해진다. 이런 이유로 의료정보의 이동·공유·활용은 일반적인 개인정보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며, 특히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이동·공유·활용에 더욱 높은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의료정보가 디지털화 되고, 이의 본격적인 활용이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디지털화된 의료정보의 이동·공유·활용 등에 대한 법령·가이드라인이 불명확하고 제약도 많다.⁶⁰⁾ 개인건강정보는 개인이 동의하면 쉽게 만들 수 있지만, 해당 정보가 의료 데이터, EMR과 결합되면 의료법에 해당하게 되고, 새로운 기술과 융합하면 기존 규제에 또 다른 규제가 추가되는 등 이러한 과정이 반복된다.⁶¹⁾ 따라서 의료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동시에 의료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60) 박정원/심우현/이준석, 위의 논문, 74~75면.

61) 박정원/심우현/이준석, 위의 논문, 75면.

포괄적 동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많은 나라가 본인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포괄적 동의가 가능하게 하여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개별 연구에 대한 한정적 동의만을 허용하기 때문에 의료정보의 활용이나 빅데이터의 생성이 불가능에 가깝다.⁶²⁾

의료정보 데이터를 공개하여 빅데이터를 만드는 사업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 발전 및 과학기술 연구 활성화의 관점에서 적극적이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법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보수적인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 건강 증진이 목적인 보건복지부는 R&D 사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만들어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 재활 등 여러 측면에서 오히려 국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보의 유출보다는 합리적인 활용의 측면에서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의료정보에 한정된 규제 문제점은 의료정보 비식별화 문제, 포괄적 동의 금지와 정보유출 책임 소재의 불명확이 확인되었다.⁶³⁾ 이에 따라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을 위해 의료정보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즉, 의료·건강정보 표준화 및 비식별화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기준을 정하여 의료·건강정보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민감한 의료정보의 안전한 관리에도 힘써야 한다.⁶⁴⁾ 정보관리책임자가 1차적으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였거나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고 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등 모든 열람 기록을 확인·관리하도록 하여 개인의료정보 등이 유출되거나 불법적으로 활용되었을 때, 유출자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의료정보를 보유한 기업 등 정보관리기관이 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일련의 업무를 게을리 하는 등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절한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이외에 징벌적배상 및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으나,⁶⁵⁾ 해당 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본다.

62) 박정원/심우현/이준석, 위의 논문, 76면.

63) 박정원/심우현/이준석, 위의 논문, 77면.

64) 박정원/심우현/이준석, 위의 논문, 78면.

65)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입법 반대과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상업적 판매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 폐기, 보도자료, 2019. 9. 23. 참조[<https://www.peoplepower21.org/PublicLaw/1655829>].

(6) 블록체인에 기반한 의료정보의 활용 방안

정보주체가 블록체인 분산원장에 기반하여 자신의 의료정보를 p2p 방식으로 직접 거래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개인정보 이용에 따른 동의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⁶⁶⁾ 이는 기존 법규에 위반하지 않아 법령의 개정 없이도 의료정보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게 하므로 그 효용성이 높다.⁶⁷⁾ 예컨대 의료정보의 주체인 개인은 특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단, 진료 등의 의료정보를 블록체인 기반의 앱 등을 통해 전송받을 수 있어 다른 병원에 갈 때에 중복검사를 받거나 자신의 진료차트를 직접 복사해서 가져가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또한 정보주체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자신의 의료정보를 연구기관 등에 제공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 토큰을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⁶⁸⁾ 그런데 블록체인을 이용한 의료정보의 활용은 몇 가지 법적인 문제의 검토가 필요하다. 즉, 개인의 의료정보를 사적 계약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 스마트 계약의 법적인 효력과 의료정보의 소유권 귀속 문제, 의료정보의 보존 및 폐기의 문제, ICO 규제 완화의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⁶⁹⁾ 개인의 의료정보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의 문제와 관련한 입법 논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기술적으로도 의료정보 데이터의 표준화가 시급히 필요하며, 자신의 중요한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곳에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도 준비해야 한다.

(7) 검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에 제공하는 헬스케어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66) 심미량/심현주, 앞의 논문, 41면. 블록체인(blockchain) 또는 분산원장(distributed)은 합의 알고리즘에 의해 유지되고, 여러 노드(컴퓨터)에 동시에 복제·저장되고 공유되는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이다. 즉, 양 당사자 간의 거래 내용을 원장이라고 하는 블록에 공개적으로 동시에 기록해서 복제·공유(shared and synchronized)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블록체인은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누가 특정 시간에 무엇을 소유했는지를 문서화하고 확인할 수 있다. 특정 거래가 검증되고 다른 참가자 또는 노드에 의해 암호학적으로 검증된 후 “블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블록에는 거래가 발생한 시기, 이전 거래 및 그 거래의 세부 정보보다 들어가 있다. 일반 블록으로 기록되면 거래는 시간 순서대로 정렬되며 변경될 수 없다. 이하 이창범, “블록체인에서 개인정보 및 불법정보 이슈”, 1면.

67) 심미량/심현주, 위의 논문, 41면.

68) 심미량/심현주, 위의 논문, 32면.

69) 심미량/심현주, 위의 논문, 41면. 이와 관련하여 심미량/심현주, 33~40면에서 법적 검토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위해서는 웨어러블기기를 통한 개인의 건강생활정보 이외에 유전자정보, 개인의 의료정보가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웨어러블기기의 특별이익제공의 범위가 10만원까지 넓혀졌기에 기본적인 헬스케어서비스의 제공에 숨통이 트인 것으로 보인다. 유전자정보의 경우에 검사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져 100달러 정도면 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헬스케어서비스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히 개인의료정보의 경우에도 마이데이터 산업의 정착 및 빅데이터 경제 3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정보주체가 자신의 의료정보에 접근하여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개인의료정보는 정보의 공공성, 의료기관에 산재해 있는 정보의 표준화 문제, 정보의 대량 유출과 같은 보안 문제 등이 한계로 작용하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기반한 마이데이터 산업의 추진 속도에 따라 머지않은 장래에 보험사의 헬스케어서비스에 활용 가능하리라 본다. 이러한 희망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개인의료정보의 활용 확대는 요원하다.

그런데 개인의료정보의 활용은 궁극적으로 의료정보주체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용 확대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개인의료정보의 정보주체가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 조치를 전제로 구체적인 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개인의료정보의 데이터 가치 활용 측면에서 균형적인 보호를 추구해야 한다. 법률로써 개인의료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과 동시에, 개인의료정보의 산업적·경제적 가치 활용을 위한 법적·실질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19대 국회 이전에 논의되었던 개인의료정보 관련 법안 등도 대부분 보호에 주안점이 두어져 있었으며,⁷⁰⁾ 아쉽게도 20대 국회에서는 개인의료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법안이 제안되지도 않았다. 앞으로 개인의료정보와 건강생활정보 및 유전자정보 등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를 실현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처럼 개인의료정보가 포함된 개인건강정보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오히려 정보보호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는

70) 가장 최근 발의된 법안인 19대 국회 신경림 의원의 개인의료정보보호법안(의안번호 1900932)의 경우에 개인의료정보, 의료기록, 전자의료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등 의료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거의 법안들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의료정보 정보화보다는 의료정보의 보호와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안 제1조), 개인의료정보를 의료인의 진료 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한정하고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건강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점(안 제2조) 등을 통해 볼 때, 개인의료정보 보호 측면이 강조된 법안이었다.

상황에서 정보를 분석하여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정보주체의 건강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령 및 정책의 방향을 수립한 후, 추진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정보통제권이 데이터의 수집, 분석, 공유, 결합 등 단계별 과정에 맞추어 적절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한다면, 정보보호도 선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4. 소결

4차 산업혁명이 야기하는 보험업 환경의 변화는 보험산업의 긍정적인 발전을 유인하고 있다. 보험업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정보의 집적과 활용이 용이한 산업적 특성이 내재해 있으므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정보통신기술과 같은 기술혁명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경우, 바이오 헬스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만, 오프라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험업무가 축소됨으로 일자리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런데 오히려 새로운 기술을 운용할 인력이 증가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하다.

보험회사의 수익구조 면에서 고령의 보험계약자 등이 증가하고 있기에 이러한 고령보험계약자 등의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헬스케어서비스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국가적으로도 보험업에서의 헬스케어서비스 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되어 향후 헬스케어서비스의 발전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별로 보험계약자 등의 건강생활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며, 전체 보험업계 차원에서도 보험계약정보를 공유하는 등 정보의 집적과 활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에는 보험상품을 만드는 과정, 보험계약에 이르는 보험모집의 과정,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심사 과정이 중요한 보험업의 유형이었다. 여기에 앞으로는 보험계약자 등의 건강 유지 및 관리, 치료 및 재활 과정이 주요한 보험업의 업무로 부각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보험업을 둘러싼 법제는 개개인의 건강생활정보, 유전자정보, 의료정보를 합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V. 맺는 말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법령도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정교해질 것이다. 그러나 법령이 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 가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또한 단순히 개별 구체적인 법령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타 관련 법령이 특정 산업이나 업종의 정책 추진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다. 헬스케어서비스의 경우를 보더라도 민영보험 상품의 개발과 출시, 모집, 계약 체결 및 유지, 보험금 지급 과정에 의료법이나 빅데이터 경제 3법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 정부 부처 간의 협의가 중요해지면서 실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의 수많은 부품 중에 어느 하나가 없으면 자동차가 운행할 수 없듯이 헬스케어서비스와 연계된 법령이 일시에 개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 높은 혁신을 이루어 내기 어렵다. 다행스럽게도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되었고, 개인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산업의 추진 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한 산업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이에 기초한 법령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 글에서는 헬스케어서비스의 활성화 필요성, 빅데이터 경제 3법의 개정 동향 및 과제, 빅데이터에 기반한 개인의료정보의 헬스케어서비스 활용 방안을 논의하였다.

보험사의 헬스케어서비스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고령자가 만성질환까지 있을 경우, 헬스케어서비스를 이용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예컨대 전자기기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데 조작 등 사용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이 논문에서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에 근거한 모형인 정보주체가 주도적으로 개인의료정보를 입수하여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의료정보의 표준화 문제, 의료정보의 공유 및 결합 문제, 의료정보의 유출 등 보안 문제, 데이터의 소유권 문제, 프라이버시권 침해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보험사가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정보주체로부터 전자의무기록 등 개인의료정보를 입수한 이후, 이미 수집한 건강생활정보 및 유전자정보 등 여러 정보를 결합하여 의학적 진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보험사가 이러한 진단을 하기 위해 의사자격을 가진 의료인을 고용할 경우에 법적 분쟁의 가능성은 줄어들겠지만, 간호사 자격 수준의 인력으로 헬스케어서비스를 확대한다면 의료법 위반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견으로는 일정 경력 이상의 간호사가 “보험계약자 등의 질병을 예방·관리하거나 적합한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선택하기 위한 수준으로 행하는 의료행위”는 허용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가칭 「건강관리서비스법」 과 같은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 헬스케어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단행본>

고학수, 「개인신용정보의 공유와 보호의 한계에 대한 최적화 구조 연구」, NARS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14. 10.

김민호 외 6명, 「개인정보보호 규제 합리화 방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 보고서, 2013. 11.

보험미래포럼, 「건강보험의 진화와 미래」, 21세기북스, 2012. 5.

이민영, 「정보인권의 규범구체화」,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341집, 집문당, 2013.

<연구논문>

김나루,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익명화 또는 비식별화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5권 2호, 2019. 8.

김민호,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상장」, 2015. 10.

김영국, “헬스케어와 보험업법상 쟁점 - 헬스케어서비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경영법률」 제29집 제2호, 2019. 1. 31.

김태엽,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과 시사점: EU GDPR을 중심으로”, 「현안분석」 제23권, 국회입법조사처, 2018.

박경희/임예진/신정순, “보험산업의 개인정보보호 법제관련 사례연구”, 「유라시아연구」 제14권 제3호(통권 제46호),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7.

박정원/심우현/이준석,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제25권 제1호, 2018. 봄호.

배동민/박현수/오기환, “빅데이터 동향 및 정책 시사점”,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5권 제10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손도일/김나래, “국내 금융회사에 GDPR이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전자금융과 금융보안」 제10호, 2017.

심미랑/심현주,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한 의료정보 활용의 법적 쟁점”, 「산업재산권」 제58호, 2019. 9. 20.

이인호,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동의제도에 대한 비판적 분석 - 잘못 설계된 동의제도 -”, 2019 개인정보보호 포럼 정기토론회, 2019. 10. 1.

이희옥, “빅데이터 환경에서 보험업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소비자문제연구』 제50권 제2호, 2019. 8.

채원영, “인공지능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2018. 6.

<자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67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19. 4.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보도자료, 2018. 7. 18.

김병욱의원 신용정보법 개정안, 의안번호 2016636.

노웅래의원 위치정보법 개정안, 의안번호 2016620.

노웅래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안번호 2016622.

매일경제, 보험정보 800만건 뚫렸다..보험개발원·협회 중징계, 2013. 11. 24.

이데일리,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고발건, 검찰 무혐의 처분..빅데이터 활성화 물꼬, 2019. 4. 11.

신경림의원 개인의료정보보호법안, 의안번호 1900932.

인재근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의안번호 2016621.

이코노빌 리뷰, [금융증 'IFRS17' 도입에 보험사 찢절매는 이유는? 보험부채 평가방식 원기에서 시가로...자본부담 가중, 2019. 9. 29.

비즈니스포스트, 국회 '빅데이터경제 3법' 처리지연, 빅데이터 산업 때 놓치나, 2019. 3. 25.

지디넷, 개인정보보호 중복규제, 업종별로 교통정리, 2016. 4. 18.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입법 반대과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상업적 판매 허용하는 개인 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 폐기, 보도자료, 2019. 9. 23.

한국경제, [김도형 변호사의 금융·보험 바르게 알기 (17)] 정부, 금융분야 마이데이터(My data) 산업 도입방안 발표, 2018. 8. 9.

한국경제, 보험사, 고객동의 없이 질병정보 설계사에게 제공, 2018. 1. 16.

2. 해외문헌

The Economist, “An earthquake in European banking - New payments regulation has the potential to shake up the banks”, 2017. 3. 23.

<Abstract>

Legal Policy Issues for Promoting Healthcare Service - Focused on the application of the big data based personal health record -

Kim, Young-Kook

Healthcare service is essential for insurance companies to manage and keep a policyholder's health and for the efficient treatment. It should be guaranteed properly in order to increase insurance usefulness. Unfortunately, insurance companies face some limitations in providing enough healthcare service for a policyholder in a practical level. The main limitations are interpretation of medical behavior according to Medical Service Act and sharing of health records. With regard to the legal issue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other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s have a variety of discussion. However, any visible effect has yet to be produced. It is still unclear that forward-looking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and legal revision will be made, due to the opposition of the medical circle. Nevertheless, given the three acts of big data economy to be revised and the government's announcement of MyData industry, the big data based industries, including the insurance industry that urgently need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re expected to achieve visible development. Ultimately, for efficient treatment, it is necessary to find a plan that helps the medical staff or information objects access and use medical record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health data integration and management system in the national dimension, and to make a data management system that helps information objects use health records for treatment.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act of integrated big data which embraces the three acts of big data economy in order to address legal issues. In particular, if an information management, access, and utilization system interacts with the insurance information integration system in

the insurance industry in order for insurance companies to apply personal health records to their healthcare service advancement, better service will be provided. Although th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of the insurance industry can technically combine with the personal health records manag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it is less likely to be implemented due to abuse of information. Therefore, the proper plan for utilizing healthcare service is to let information objects directly receive their sensitive data from an information manager through mobile app and then agree on the use of their data.

Key Words : healthcare service, personal health record, big data, health insurance, affordable health insurance, health standardization